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공공기관이 보유·이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9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I. 개 요

1. 발 의 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30.
3. 회부연월일 : 2024.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복잡도와 정보시스템간 연계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23년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비롯하여 차세대 정보화 사업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여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전자정부 업무에 대한 주무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를 컨트롤타워로 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1호 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등으로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

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마련(안 제56조의2 개정)

-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복구 등을 위한 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2)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행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다.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점검체계 구축(안 제56조의3 신설)

-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해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2)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안 제56조의4 신설)

-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공유·지원체계를 구축하

고 각 기관의 장은 장애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고 필요 시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수반되는 건축물(전산실, 데이터센터 등) 및 건축설비(전기·기계·소방 설비 등)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56조의4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u>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 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u>	제2조(정의)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u>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 나목에서 라목까지에 한한다.</u> <u>가. 행정정보</u> <u>나. 정보시스템</u> <u>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u> <u>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수반되는 건축물 및 건축설비(이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라 한다)</u> <u>마. 정보화 예산</u> <u>바. 정보화 인력</u>
12. ~ 15. (생략)	12. ~ 1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이하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른 장애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장애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상황의 신속한 전파, 복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을 체계적으

현행	개정안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	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복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수립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장애 발생 사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애 대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에

현행	개정안
<u>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56조의3(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 합동조사 방안 및 중복 점검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u>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현황조사 및 점검 결과, 정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u>

현행	개정안
<신설>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의 수립, 개선 권고, 조치계획·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4(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시스템의 장애상황을 통합적으로 관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해당 상황을

현행	개정안
	<u>전파·공유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의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이하 “장애사후관리”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해당 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u> <u>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장애의 발생 원인 및 대응과정 등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사후관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u>

현행	개정안
<u>제56조의3(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u>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비상사태, 대규모 재난 또는 사이버 공격 등으로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라 통합·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중앙사무관장기관 소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u>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이용촉진에 관한 업무</u> 2. <u>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u> 3. <u>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업무</u>	<u>하여야 한다.</u> <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리 및 장애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56조의5 (현행 제56조의3과 같음)</u>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4. <u>감리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업무</u> 5. <u>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및 개선에 관한 연구</u> 6. <u>전자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업무</u> 7. <u>그 밖에 전자정부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u> ② <u>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u> ③ <u>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는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u>	3의2. <u>제5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업무</u> 3의3. <u>제5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등에 관한 업무</u> 4.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년 11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시스템(시도·서울 시스템)은 네트워크 장비 불량으로 로그인에 되지 않아, 민원실 등의 행정업무가 중단되고 정부24 등의 대민서비스에도 장애가 확산되었으며, 2023년 12월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해외 특정 IP의 집중접속 및 연말 투찰건수 증가로 일부 사용자의 접속이 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음.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관련 현황(2023.11.~12.)]

정보시스템	발생일시·기간	장애원인	불편사항	대처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23.11.17. 08:46 ~ 11.18. 09:00	광주센터와 대전본원을 연결하는 라우터 포트 불량	공무원 로그인이 필요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및 연계 대민서비스(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 접속 장 애	▶라우터 모듈 포트 교체 ▶민원발급 대체 사이트 안내, 수기대장 접수 및 소급 처리
나라장터	‘23.11.23. 09:19 ~ 10:21 (62분)	해외 특정 IP에서 집중 접속으로 인한 일시적 과부하	나라장터 홈페이지 일부 사용자 접속불가	▶해당 특정 IP 차단 ▶조달청 “전자입찰 자동연기 기준”에 따라 입찰 연기 공지
나라장터	‘23.12.12. 10:00 ~ 10:28 (28분)	연말 투찰건수 증가에 따른 접속자수 초과로 서비스 지연	나라장터 홈페이지 접속 지연	▶최대접속 설정값 변경 및 서버 증설 ▶조달청 “전자입찰 자동연기 기준”에 따라 입찰 연기 공지

※자료: 행정안전부

연이은 서비스 장애는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불안정성과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정부는 행정전산망 범정부 대책 TF를 구성하여 상시 장애 예방, 신속 대응 복구, 안정 기반 강화의 3대 분야에 12개 대과제 및 26개 세부과제를 내용으로 하여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¹⁾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분야	대과제(12개)	세부과제(26개)
상시 장애 예방	① 위험징후 상시 감시 강화	▲ 개별기관 모니터링 강화 ▲ 범정부 통합모니터링
	② 위험분산형 구조 개선	▲ 장애 확산 방지 인프라 구조 적용 ▲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가속화
	③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강화	▲ 예방점검체계 마련 ▲ 연계현황 사전 관리
	④ 등급제 기반의 효율 관리	▲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 ▲ 장애 등급 신설
신속 대응 복구	⑤ 통합 장애대응체계 구축	▲ 안정성 점검·구조진단 지원 ▲ 신속 대응·복구 ▲ 민관합동 장애 조사 및 사례관리·환류
	⑥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복구 지원체계 마련	▲ 장애 상황관리·전파 ▲ 민관합동 복구 지원체계
	⑦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대국민 안내 강화	▲ 중단없는 행정·민원 서비스 구현 ▲ 신속한 대국민 알림 및 불편 해소
안정 기반 강화	⑧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편	▲ 정보시스템 통·폐합 ▲ 국정자원 운영 혁신
	⑨ 공공부문 정보화 역량 강화	▲ 운영·유지보수 사업 전문성·연속성 강화 ▲ 공공부문 우수 인재 확보 및 내부 역량 강화
	⑩ 정보화사업 참여여건 개선	▲ 정보화사업 참여제한 개선 ▲ 대가체계 개선
	⑪ 사업수행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발주지원 서비스 제공 ▲ 과업내용 투명성 제고, ▲ 사업관리 강화 및 갈등중재제도 개선
	⑫ 인프라 복원력 제고	▲ 노후장비 교체 및 이중화 적용, ▲ 재해복구시스템 실효성 제고

※자료: 행정안전부

1) “디지털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관계부처 합동 2024.1.31. 참고

개정안은 동 종합대책의 12개 대과제 중 ① 위험징후 상시 감시 강화, ③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강화, ⑤ 통합 장애대응체계 구축, ⑥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복구 지원체계 마련과 관련된 것으로,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관리 및 장애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사항들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공공기관들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책임감 있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1호는 현재 통합관리 대상²⁾인 정보자원의 개념을 수정하여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수반되는 건축물 및 건축설비(이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라 함)’를 정보자원으로 명시하면서,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에 ‘이용’하고 있는 민간의 정보자원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였음.

[정보자원 정의 개정(안 제2조제11호)]

현 행 ³⁾	개 정 안
○ 정보자원: 행정기관등이 <u>보유한</u> 행정정보,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	○ 정보자원: 행정기관등이 <u>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u> 행정정보,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 <u>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수반되는 건축물</u>

- 2)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이하 “정보자원현황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이하 “정보자원 통합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하 “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의 구축·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및 건축설비(“정보시스템 운영시설”로 약칭) ※ 다만, 이용하는 경우는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정보시스템 운영시설로 한정⁴⁾
--	---

안 제56조의2~제56조의4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 대한 장애관리계획 수립(안 제56조의2)과 안정성 확인을 위한 현황조사 및 점검(안 제56조의3), 장애 발생 또는 우려 시의 상황 관리와 사후 점검(안 제56조의4)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56조의2는 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하 “행안부장관”이라 함)이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

3)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4.~5. (생 략)
 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 7.~10. (생 략)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12. (생 략)
 1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 14.~15. (생 략)
- 4) 민간의 정보화 예산, 정보화 인력까지 정보자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정보자원의 범위에서 제외

대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에 통보하면, 행정기관등은 해당 지침에 따라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의 범위를 정보시스템 운영시설까지 확대하고, 행안부장관의 수립지침 통보를 통해 보다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장애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장애관리계획 수립]

현 행	개 정 안
○ 행정기관 장: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	○ 행안부장관: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 포함) 장애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u>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 작성</u> →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 ↓ ↓ ↓
	○ 행정기관등의 장: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복구하기 위한 <u>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u>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 행안부장관: 수립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u>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장애 발생 사례 등 자료 요청 가능</u> ↓ ↓ ↓ ○ 행정기관등의 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안 제56조의3은 행안부장관으로 하여금 행정기관등의 장이 보유 또는 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 대하여 그 안정성 확인을 위한 현황조사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각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과 전산실이나 데이터센터 등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제공에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⁵⁾하게 되면서 각 행정기관등이 이용하고 있는 민간의 정보자원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또한, 안 제56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⁶⁾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⁷⁾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를 행안부장관의 현황조사 및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안부장관의 현황조사 및 점검 시 관계 기관 합동조사 및 중복점검 방지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5)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024.4.)

중점 추진과제 1.3.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 인공지능·데이터·서비스 융합 플랫폼 마련

☐ 누구나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민간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면 전환**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생략)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통신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

2.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

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사항에서 제외한다.

④~⑨ (생략)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에 행안부장관의 현황확인 및 점검이 추가됨에 따라 민간에 부가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및 점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행안부장관: 행정기관등의 장이 <u>보유 또는 이용</u>하는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 포함)의 안정성 확인을 위하여 <u>현황조사 및 점검</u> 실시 가능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관계 기관 <u>합동조사</u> 방안 및 <u>중복 점검 방지</u>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 계획 수립 ↓ ↓ ↓ ○ 행안부장관: 현황조사 및 점검 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u>개선 권고</u> 가능 ↓ ↓ ↓ ○ 행정기관등의 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u>조치계획과 결과 통보</u>

안 제56조의4는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안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또한 행안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시 장애 상황의 인지와 그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또한 장애 발생 이후에도 그 원인과 대응 과정을 조사·분석 후 개선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장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정보시스템의 장애 상황 및 사후관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행정기관등의 장: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또는 우려 → <u>행안부장관</u>에게 지체 없이 <u>통보</u> ○ 행안부장관: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의 <u>통합 관제</u>를 위한 <u>시스템 구축·운영</u> 가능 ↓ ↓ ↓ ○ 행안부장관: 장애 발생 또는 우려 <u>통보</u>를 받거나,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한 장애상황 <u>인지</u> → 관계 기관에 <u>상황 전파·공유, 기술지원 등 조치</u>
	○ 행안부장관: 장애의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u>장애사후관리</u>) 실시 (또는) ○ 행정기관등의 장: <u>장애사후관리</u> 실시 → 행안부장관에게 <u>결과 제출</u> ↓ ↓ ↓ ○ 행안부장관: 장애사후관리 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u>개선 권고</u> 가능 ↓ ↓ ↓ ○ 행정기관등의 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u>조치계획과 결과 통보</u>
	○ 행안부장관: 장애사후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u>장애의 발생 원인 및 대응과정 등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등 요청</u> 가능 ↓ ↓ ↓ ○ 행정기관등의 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전자정부법」의 정의 규정⁸⁾에 따르면 ‘행정기관등’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헌법기관”이라 함)이 포함됨.

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행안부장관이 행정기관등에 지침을 통보하여 행정기관등이 지침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행안부장관이 행정기관등에 자료를 요청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규정에 헌법기관도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또한 안 제71조에서 안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사무관장기관⁹⁾의 장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바,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의 역할이 제외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⁰⁾

8)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15. (생략)

9)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5.~15. (생략)

10) 현행 「전자정부법」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분리하여 각각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안 제71조 현행 및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u>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중앙사무관장기관 소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u> 1.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이용촉진에 관한 업무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 3.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업무 <u><신 설></u> <u><신 설></u> 4. 감리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업무 5.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전자정부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u>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u>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지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업무 3의3. 제5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등에 관한 업무 4.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는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u>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u>으로 정한다.	
--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대다수 행정업무가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국민 불편 등 사회적 파급력이 막대한 바, 디지털공공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정부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9